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검 사 의 수 사 개 시 범 죄 범 위 에
관 한 규 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송치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
진범을 확인하게 된 경우 ‘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
주’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
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7. 12. ~ 8. 23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률 제 호

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

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진범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수사개시 세부기준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수사개시 세부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 죄와 관련하여 진범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진범 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본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210